

# 자금운용규정

제정 : 2004.11.30  
1차 개정 : 2005. 7. 6  
2차 개정 : 2007. 7. 5  
3차 개정 : 2010. 7. 6  
4차 개정 : 2010.11. 5  
5차 개정 : 2014. 3.2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이란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2.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이란 해외금융기관 본점이 대한민국내 지점의 채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3.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에는 거래약관상에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
4. “위탁투자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통법”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다만,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은행권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에 대한 투자”란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은행권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투자”란 제4호의 위탁투자기관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채권, 주식 등을 위탁투자기관을 통해 매매하거나 위탁투자기관이 운용·판매하는 신종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는 직접 투자로 본다.
7. “직접투자”란 제5호의 “은행권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제6호에서 정한 “위탁투자”를 제외하고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각 운용자산 또는 상품의 운용성과를 사후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해 놓은 수익률을 말한다.
9. “목표수익률”이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타 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 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제3조(운용담당자의 준수 의무)** ① 자금운용 담당직원은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 담당직원의 준수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국가재정법에 의해 자산운용지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규정 제5조(의결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②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처리절차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면책)** 자금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직원은 면책된다.

## 제 2 장 자금 운용

**제6조(운용원칙)** ①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 지급 등 적기 지출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기금확대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배분)** 자금수지계획 및 자금운용관련 허용 위험한도를 감안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배분한다

**제8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월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의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자금운용전략
3. 자산별 및 투자방법별 배분계획
4.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5. 총 허용 위험한도
6. 적정 유동성 규모
7.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간 자금수지계획
2. 상품별 운용계획
3. 기타 필요사항

**제9조(자문서비스)**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성과평가 등 자금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유료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①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금운용 성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운영한다.

② 목표수익률은 운용상품, 위험한도 및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설정한다. 다만,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용상품)**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제6조의 운용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기관의 기본요건)** 은행권 금융기관 및 위탁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기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권 금융기관 : BIS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 단, 외국계은행국내지점은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통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인가를 득한 회사 중 영업용순자본비율 150/100이상인 회사
3. 집합투자업자 : 자통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집합투자업으로 인가를 득한 회사
4. 투자일임업자 : 자통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한 회사
5. 신탁업자 : 자통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탁업자로 인가를 득한 회사

**제13조(금융기관의 선정 및 평가)** ① 은행권 금융기관 및 위탁투자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금운용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4조(직접투자)** ①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투자의 대상 등에 대하여는 요령에 따른다.

**제15조(위탁투자)** ① 외부 전문가의 운용능력 활용을 통한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투자의 방법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요령에 따른다.

### 제 3 장 심의·의결기구

**제16조(금융자산운용위원회)** ①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금융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금운용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부위원과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운용담당 본부장
2. 자금운용담당 부서장
3.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금융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심의한다.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금운용관련 허용 위험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17조(투자실무위원회)** ①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부내에 투자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금운용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 제 4 장 위험관리 및 운용성과 평가

**제18조(위험관리)** ① 자금운용의 위험관리는 제반 운용업무가 제6조에서 규정한 자금의 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 담당부서는 자금운용계획시 수립된 허용위험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험의 측정 및 자금운용관련 허용 위험한도 설정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운용성과 평가 등)** 자금운용 성과평가는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자금운용 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성과급 지급)**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운용성과의 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담당자에게 포상 또는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금운용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 제 5 장 공 시

**제21조(공시)** ①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의 내용, 공시의 범위 및 공시주기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금운용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2004년 12월말까지의 자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종전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금융자산운용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후, 동 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에 반영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